

1. 개정이유

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“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‘국가유공자등’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‘국가유공자등’의 특별공급 한시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(안 제2조, 제4조)
- 나.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(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)
- 다.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등 합산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2항 신설)
- 라. ‘국가유공자등’ 특별공급 한시규정 기한 연장(안 제4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전단 중 “**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**”를 “**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**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전북특별자치도

8. 강원특별자치도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영업상의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동의 등을 받아 취급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입요건, 제3항에 따른 월납입금,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선납 범위, 제13조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방식 등을 달리 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전의 입주자저축을 해지한 날 이후부터 제1항제1호에 따른 날 이전까지 다른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자저축의 인정된 납입횟수 및 납입금을 종전의 입주자저축에 합산할 수 있다.

제23조제2항제9호 중 “서류(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형·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”를 “서류”로 한다.

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4년 3월 31일”을 “2029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의 개정사항 경과조치)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.

제3조(주택공급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입주자저축취급기관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)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칙(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 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에 따라 지정된 입주자저축(청약예금, 청약부금 및 청약저축)의 취급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주택건설지역”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</u> 또는 시·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.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</u> 또는 시·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.</p> <p>2의2. ~ 10. (생 략)</p> <p>제4조(주택의 공급대상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</u> -----.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의2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주택의 공급대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5. 전라북도

6.·7. (생략)

8. 강원도

④ ~ ⑩ (생략)

제5조(입주자저축취급기관) ①·

② (생략)

<신설>

제9조(가입 및 납입조건) ① 주택
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
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5. 전북특별자치도

6.·7. (현행과 같음)

8. 강원특별자치도

④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입주자저축취급기관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
정된 금융기관은 영업상의 사정
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는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
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동의
등을 받아 취급하고 있는 주택
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
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
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.

제9조(가입 및 납입조건) ① 주택
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
할 수 있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
관은 가입요건, 제3항에 따른
월납입금, 제10조제1항에 따른
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선
납 범위, 제13조에 따른 원금 및
이자 지급방식 등을 달리 정한
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할 수
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경우로서 소형·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③·④ (생략)

제45조(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)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하여 건설·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·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(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)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) ----- 2029년 3월 31일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